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

공유재산특례제한법률안 및 공유재산특례제한법안

검 토 보 고

〈다른 법률을 통한 공유 재산 특례 신설 제한 등〉

- 한병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848호)
- 배준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434호)

2024.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목 차

I. 개요	1
【한병도의원안】	
1. 제안 경위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배준영의원안】	
1. 제안 경위	4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4
II. 총괄 검토	7
1. 제정안의 입법 취지 및 현행법 체계	7
2. 제정안의 주요 내용	13
3. 유사 입법례와 비교	15
4. 공유재산 특례 현황	17
5. 총괄 검토	17
III. 조항별 검토	19
1. 목적, 정의, 적용범위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19
2. 공유재산특례의 제한, 기본원칙 (안 제4조 및 제5조)	23
3. 공유재산특례 신설 등에 관한 심사 등 (안 제6조 및 제7조)	25
4. 양여의 용도 제한 (한병도의원안 제8조 및 배준영의원안 제9조)	31
5. 공유재산특례종합계획 수립 (배준영의원안 제8조)	33
6. 권한의 위임 (배준영의원안 제10조)	35
7. 부칙	36

I. 개요

【한병도의원안】 공유재산특례제한법률안

1. 제안 경위

가. 발 의 자 : 한병도의원 등 10인

나. 발의연월일 : 2024. 8. 14.

다. 회부연월일 : 2024. 8. 16.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공유재산의 양여, 사용료 감면 등 공유재산특례가 개별법에서 과도하게 규정되어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고,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과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서만 공유재산특례의 신설 및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공유재산특례 규정의 기본 원칙, 신설 공유재산특례의 심사와 기존 공유재산특례의 사후관리 등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1) 공유재산특례의 정의(안 제2조)

‘공유재산특례’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지 아니한 공유재산에의 영구시설물 축조, 공유재산의 양여, 사용허가 또는 대부와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등의 감면으로 정의함.

2) 공유재산특례의 제한(안 제4조)

‘공유재산특례’는 별표에서 규정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도록 하고 공유재산특례의 존속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이 법 별표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별표에 따르도록 함.

3) 공유재산특례의 기본원칙(안 제5조)

법률에 공유재산특례를 규정하려는 경우에는 공유재산특례 목적의 공익성, 요건의 명확성 및 존속기간의 적절성 등 공유재산특례의 기본원칙을 준수하도록 함.

4) 공유재산특례의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심사(안 제6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유재산특례를 신설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공유재산특례의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유재산정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유재산특례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을 심사하도록 함.

5) 공유재산특례에 대한 사후관리(안 제7조)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유재산특례의 적정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하도록 하고, 운영 방식 또는 절차가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공유재산특례의 유지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공유재산특례의 폐지를 위한 관련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배준영의원안】 공유재산특례제한법안

1. 제안 경위

가. 발 의 자 : 배준영의원 등 10인

나. 발의연월일 : 2024. 8. 30.

다. 회부연월일 : 2024. 9. 2.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공유재산은 2023년말 기준 1,060조원 규모에 이르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자산으로,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해 공유재산특례가 과도하게 신설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성이 있음.

하지만 국유재산의 경우 2011년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제정하여 특례를 제한하고 있으나, 공유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이외 개별법을 통해 공유재산특례를 신설할 수 있어 공유재산특례는 지난 10년간 국유재산특례 대비 약 5배가 증가하였음.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원하지 않아도 공유재산특례가 신설되거나, 국유재산 특례는 신설되지 않고 공유재산특례만 신설되는 불형평한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유재산특례의 과도한 신설을 방지하고 국가와 지방이 통일

성 있게 특례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이 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서만 공유재산특례의 신설 및 운영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1) 공유재산특례의 정의(안 제2조)

‘공유재산특례’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지 아니한 공유재산의 영구시설물 축조, 양여, 사용허가·대부와 사용료·대부료 등의 감면으로 정의함.

2) 공유재산특례의 제한(안 제4조)

‘공유재산특례’는 별표에서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도록 하고, 이 법 별표는 이 법 외의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도록 하며, 공유재산특례의 존속기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이 법 별표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 별표에 따르도록 함.

3) 공유재산특례의 기본원칙(안 제5조)

공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으로 공유재산특례를 신설 또는 변경하거나 운용할 때에는 공유재산특례 목적의 공익성, 경제성, 요건의 명확성 및 존속기간의 적절성 등 공유재산특례의

기본원칙을 준수하도록 함.

4) 공유재산특례의 신설 등에 관한 심사(안 제6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유재산특례를 신설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공유재산특례의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유재산정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유재산특례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을 심사하도록 함.

5) 공유재산특례에 대한 사후관리(안 제7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유재산특례를 신설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공유재산특례의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유재산정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유재산특례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을 심사하도록 함.

6) 공유재산특례의 종합계획의 수립(안 제8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특례종합계획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함.

II. 총괄 검토

1. 제정안의 입법 취지 및 현행법 체계

(1) 입법 취지

「공유재산특례제한법률안」 및 「공유제한특례제한법안」(이하 “제정안”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기간을 초과하는 공유재산¹⁾의 사용허가 및 대부 ② 같은 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사용료 및 대부료에 대한 감면 ③ 같은 법에서 금지하는 공유재산의 양여 및 ④ 공유재산(토지)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법률 규정을 제정안 [별표]에 규정된 법률로 한정하려는 취지임.

현재 공유재산의 사용, 수익 허가, 대부 및 양여와 그 대가, 기간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유재산법」에서 규정하는 한편, 그 대가의 감면, 기간의 연장 등에 대해서는 공유재산법 외의 개별법에서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이 개별법에서 공유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대부 및 양여 등에 관해 일반법인 공유재산법과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현재의 법체계 하에서는 공유재산특례에 관한 일관된 원칙이나 기준을 세워 적용하기 어렵고, 정부 정책 목적이나 특정 단체 지원 목적으로 일관성 없이 특례 조항이 방만하게 운영될 수 있는 문제

1)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寄附採納)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재산을 의미함(「공유재산법」 제2조제1호)

가 있음.

특히, 행정안전부에 의하면 공유재산 관련 감면 규모는 2023년에 전년 대비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2019년과 비교하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로 감면 규모(지자체 제출기준) >

(단위: 천건, 억원)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6	1,622	77	2,928	91	3,174	89	3,427	52	2,881

※ 자료 : 행정안전부

이에 제정안은 「공유재산특례제한법」을 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장이 공유재산을 「공유재산법」에서 정한 것과 다른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공유재산특례 규정이 다른 법률에 과도하게 신설되지 않도록 관리하려는 취지임.

참고로, 국유재산의 경우 2011년 4월 「국유재산법」과 별도로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2) 현행법 체계

공유재산과 관련된 현행 법체계는 「공유재산법」, 「공유재산법」 외 법률 및 조례로 구성되어 있음.

<공유재산 관리와 관련된 현행 법체계>

「공유재산법」	「공유재산법」 외 법률	조례
-공유재산은 <u>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u>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유재산 관리 시 준수해야 하는 <u>처분제한, 사용허가(대부) 기간, 사용료(대부료) 감면</u>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u>공유재산특례* 부여 가능 (재량 부여)</u> *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양여, 사용허가 등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유재산을 <u>효율적으로 관리</u>하도록 규정 - 공유재산 매각 및 대부 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u>공유재산 관리</u>에 철저를 기하도록 규정

첫째, 「공유재산법」 제2조의2는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여²⁾ 공유재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공유재산법」에 의하면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에 대한 관리·처분 권한을 보유함³⁾.

2) 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에 관해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공유재산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寄附採納)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2. ~ 9. (생략)

제14조(공유재산의 관리와 사무의 위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공유재산을 관리·처분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공유재산을 관리·처분하게 할 수 있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그 재산을 관리·처분하게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공유재산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유재산 관리와 관련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행정재산의 처분 제한(법 제19조), 사용허가 기간(법 제21조) 및 사용료의 감면(법 제22조·제24조), 일반재산의 대부 기간(법 제31조), 대부료 감면(법 제34조)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⁴⁾.

② · ③ (생략)

4) **제19조(처분 등의 제한)** ① 행정재산은 대부·매각·교환·양여·신탁 또는 대물변제나 출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이에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행정재산의 용도와 성질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
2.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한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해당 행정재산의 목적과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지상권 또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

② ~ ④ (생략)

제21조(사용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7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은 20년(이하 이 조에서 “총 사용가능기간”이라 한다)을 넘을 수 없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한 사용허가는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제1항 본문의 사용허가기간의 범위 내에서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도 1회로 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총 사용가능기간 내에서 1회로 한정하여 10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하는 사용허가기간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의 범위로 한다.

1.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그 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⑤ (생략)

제22조(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계산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허가기간의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사용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게 하여야 한다.

④ 삭제

⑤ (생략)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아들인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허가하는 경우

둘째, 「공유재산법」 이외의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양여, 매각 등을 할 수 있는 특례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현재 총 173개의 개별 법률에서 공유재산특례를 두고⁵⁾⁶⁾ 있으며,

-
3.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4.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재난으로 그 재산을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복구 완료기간의 사용료와 그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감경할 수 있다.
- 제31조(대부기간)** ① 일반재산의 대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토지와 그 정착물: 5년
 2. 제1호 외의 재산: 1년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대부한 경우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대부기간의 범위에서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도 1회로 한정하여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는 대부기간은 제1항에 따른 대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하는 대부기간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이용하지 못한 기간의 범위로 한다.
 1.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그 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 ⑤ (생략)
- 제34조(대부료의 감면)** ①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32조에도 불구하고 그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일반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재난으로 그 재산을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복구 완료기간의 대부료와 그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감경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타인의 재산을 점유하는 동시에 해당 재산 소유자가 일반재산을 점유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재산 소유자에게 점유 중인 일반재산의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 5) 예를 들어, 「영유아보육법」 제39조의2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영유아보육법」**
- 제39조의2(국·공유재산의 대부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라 국유재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제12조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2. 제14조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이는 모두 「공유재산특례제한법률안」 [별표]에 규정되어 있음⁷⁾.

「공유재산특례제한법률안」이 제정되는 경우, 「공유재산법」 이외의 법률에 공유재산특례를 규정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특례제한법률안」의 개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셋째, 공유재산을 소유·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다수의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재산 매각 및 대부 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⁸⁾.

6)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유재산을 의무적으로 양여하도록 한 사례도 있음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공유재산 등의 무상 양여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 당시 대학 소관의 공유재산 및 물품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지방재정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무상으로 양여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7)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후단에 첨부한 참고자료 참조

8)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2조(관리책임)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 및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 또는 전산자료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 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다른 사람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
6. 사용·대부료 체납 재산

제10조(매각대금의 사용) 시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조(관리책임)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실태조사)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

2. 제정안의 주요 내용

한병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유재산특례제한법률안」과 배준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유재산특례제한법률안」은 공유재산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유재산의 적절한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한병도의원안은 본칙 8개 조항, 부칙 3개 조항 및 [별표] (공유재산특례 근거 법률 173개 포함)으로 구성되어 있고, 배준영의원안은 본칙 10개, 부칙 4개 및 [별표] (공유재산특례 근거 법률 173개 포함)으로 구성되어 있음.

한병도의원안 제1조부터 제8조까지는 배준영의원안에도 동일한 조 제목의 규정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내용도 대부분 유사·중복되며, 안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특례 근거 법률 및 규정을 규정하고 있는 [별표]도 동일함.

다만, 배준영의원안 제8조(공유재산특례 종합계획 수립) 및 제10조(권한의 위임)는 한병도의원안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음.

리에 철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
3. ~ 5. (생략)

<한병도의원안과 배준영의원안의 내용 비교>

조문	한병도의원안	배준영의원안
목적 (§1)	공유재산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유재산의 적절한 관리 도모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에 이바지	공유재산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유재산의 적절한 관리 도모
정의 (§2)	공유재산특례에 대하여 정의 - 「공유재산법」에 따르지 않는 ① 영구시설물 축조, ② 공유재산의 양여, ③ 기간을 초과한 사용허가대부, ④ 사용료, 대부료 등의 감면 * 한병도의원안배준영의원안 법문언 상이	
적용범위 (§3)	「공유재산특례제한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명시 - 법률에 따라 지자체에 기부하거나 대체 시설을 제공하는 대가로 공유재산의 양여, 점용허가,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하는 경우 - 「도로법」, 「하천법」 등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의 양여, 점용허가,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하는 경우	
특례제한 (§4)	공유재산특례 규정방식 제한 - ① [별표]에서 규정한 법률 외에는 규정 불가 - ② 존속기한에 대해서는 [별표]가 다른 법률에 우선 - ③ [별표]는 다른 법률로 개정하지 못함	
기본원칙 (§5)	공유재산특례 규정 시 준수 원칙 제시 - ① 목적이 공익에 부합 - ② 구체적이고 명확한 요건 - ③ 다른 방법보다 적절할 것 - ④ 존속기간의 적절성 * 한병도의원안배준영의원안 법문언 상이	
특례신설 심사 (§6)	행안부장관이 공유재산정책협의회 심의를 거쳐 공유재산특례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법령 제·개정의 타당성 심사 * 배준영의원안 : 공유재산정책협의회 위원장의 자료제출 권한 명시	
특례 사후관리 (§7)	공유재산특례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해 행안안전부장관이 공유재산정책협의회 심의를 거쳐 특례의 목적, 경제적 비용 등을 검토 → 운영방식·절차가 부적절하거나 유지 필요성이 없는 경우 제도개선 요청 * 배준영의원안 : 행안부장관이 지자체장에게도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	
양여재산 용도제한 (§8/§9)	공유재산을 양여받은 경우 10년 이상 지정된 용도로 사용하도록 규정	
종합계획 수립 (§8)		지자체장이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공유재산특례종합계획을 포함하여 수립
권한위임 (§10)		행안부장관이 공유재산 특례 사후관리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임 가능

3. 「국유재산특례제한법」과 제정안의 비교

「공유재산법」과 제정안의 관계는 「국유재산법」⁹⁾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의 관계와 유사하며, 제정안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참조한 것으로 보임.

다만,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국회에 제출하는 국유재산특례 운용 실적(제9조),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에 관한 사항(제10조)을 규정하고 있지만, 공유재산의 운용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내용은 「공유재산법」 제10조의2 등에 규정하고 있으며, 제정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9) 「국유재산법」 제2조는 기획재정부장관을 총괄청으로 정의하고, 총괄청이 국유재산을(중앙관서의 장이 관리·처분하는 국유재산은 제외)을 관리·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총괄청 등이 관리·처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처분의 제한(법 제27조), 사용료의 감면(법 제34조), 사용허가기간(법 제35조), 대부기간(법 제46조), 대부료의 감면(법 제47조의)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국유재산특례제한법과 공유재산특례제한법틀안 비교>

국유재산특례제한법		한병도·배준영의원안	
§1	목적	§1	목적
§2	정의 *영구시설물 축조 미포함	§2	정의 *영구시설물 축조 포함
§3	적용범위	§3	적용범위
§4	국유재산특례의 제한	§4	공유재산특례의 제한
§5	국유재산특례의 기본원칙	§5	공유재산특례의 기본원칙
§5의2	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간 설정		미규정
§6	국유재산특례의 신설등에 관한 심사 *국유재산정책심의회 활용		공유재산특례의 신설등에 관한 심사 *공유재산정책협의회 활용
§7	국유재산특례에 대한 점검·평가		공유재산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8	국유재산특례 종합계획의 수립 *각부처 → 기재부 → 국회	§8	공유재산특례 종합계획의 수립 (배준영의원안) *지자체 → 지방의회
§9	운용실적의 보고 *각부처 → 기재부		미규정
§10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의 작성 *각부처 → 기재부 → 국회		
§11	국유재산의 양여 협의 *각부처 → 기재부		
§12	양여의 용도 제한	§8/§9	양여의 용도제한 등
§13	권한의 위임 *조달청에 위임(점검·평가업무)	§10	권한의 위임 (배준영의원안) *전문기관에 위임(점검·평가업무)

4. 공유재산 특례 현황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4년 9월 말 기준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사용료·대부료를 감면하고 있는 건 수는 159건, 공유재산의 장기사용·대부를 허용한 건은 45건,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고 있는 건 수는 47건, 공유재산을 양여한 건은 36건임.

5. 총괄 검토

제정안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유재산법」에서 규정한 것과 다른 방식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근거 법률조항을 제정안의 별표에 규정된 법률로 한정함으로써 공유재산 특례의 무분별한 확대를 제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제정안 검토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첫째, 제정안을 통해 다른 법률의 공유재산 특례를 제한하는 것이 「공유재산법」에 따른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둘째, 국유재산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반면,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는 243개로 각각의 재정상황이 다양하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어 보임.

셋째, 제정안 [별표]에 규정된 특례는 정부가 법안을 제출한 시점에 각 개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특례들을 규정한 것으로서 향후 동 법률안이 제정되어 시행되기까지의 사이에 새로이 신설되거나 혹은 제출된 법률안에 미처 열거되지 못한 특례들이 있을 수 있는바, 이에 대한 기득권 또는 기대권도 형평 차원에서 보호할 필요가 있을 수 있으므로, 향후 법률안이 시행된 이후 신설된 특례들을 추가로 반영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 특례는 재정 건전화에 위해 필요 최소한 허용되어나 하나 최근 공유재산특례가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¹⁰⁾, 지자체가 원하지 않아도 부처가 일방적으로 공유재산 특례를 개별법에 신설하는 사례¹¹⁾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유재산 특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방재정을 건전화하기 위해 「공유재산특례제한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이와 관련하여 제21대 국회 당시 정부가 제출한 「공유재산특례제한법안」에 대한 입법 공청회¹²⁾에서 동 법안이 시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권한이 강화되고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약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바 있음¹³⁾.

10) 행정안전부에 의하면 2013년 공유재산 특례는 119개 법·192개 특례에서 2024년 173개 법·287개 특례로 증가하였음.

11) 행정안전부에 의하면, 과기출연연구기관의 공유지 무상 사용기간을 연장(20년→50년)하는 「과기출연기관법」 개정안에 대해 8개 지방자치단체가 반대하였으나 최종적으로 법령이 개정된 사례가 있음.

12) 제410회 국회(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록(2023.09.18.), pp4-10

13)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현재 중앙 각 부처에서 자의적으로 특례를 부여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되고 있으나, 「공유재산특례제한법안」이 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는 물론이고 국회 또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 의사결정과정의 분산되는 측면이 있다는 입장임.

Ⅲ. 조항별 검토

1. 목적, 정의, 적용범위(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제정안은 공유재산 특례와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유재산의 적절한 관리를 도모하도록 하고, 공유재산 특례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정의 규정을 두며, 제정안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열거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한병도의원안	배준영의원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유재산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유재산의 적절한 관리를 도모함으로써 <u>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u>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유재산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유재산의 적절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공유재산특례”란 <u>양도, 점용허가, 점용료의 감면 등 다른 법률에서 사용하는 명칭에도 불구하고</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 어긋나는 공유재산의 영구시설물 축조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제1항제1호 또는 제40조제1항에 어긋나는 공유재산의 양여 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 제31조 또는 제43조의9에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이하 “장기사용허가등”이라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공유재산특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 4. (한병도의원안과 같음)

한병도의원안	배준영의원안
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1항, 제24조, 제32조제1항, 제34조, 제43조의7제1항 및 제43조의8에 어긋나는 공유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그 밖의 사용 또는 수익에 대한 대가(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의 감면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대체 시설을 제공(이에 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대가로 공유재산의 양여, 장기사용허가등을 하거나 사용료등을 감면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의 양여, 점용허가,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하는 경우 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나. 「농어촌도로 정비법」 다. 「도로법」 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마. 「소하천정비법」 바. 「어촌·어항법」 사. 「자연공원법」 아. 「하수도법」 자. 「하천법」 차. 「항만법」	제3조(적용 범위) (한병도의원안과 같음)

제정안의 목적 및 적용 범위에 관한 규정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참고한 것으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국유재산특례제한법」상 유사 조항>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등 국유재산특례와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유재산의 적절한 관리를 도모함으로써 국가재정의 건전한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국유재산특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뜻한다.

1.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제34조제1항 또는 제47조제1항에 따르지 아니한 국유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그 밖의 사용 또는 수익에 대한 대가(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의 감면
2.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또는 제46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이하 “장기 사용허가등”이라 한다)
3. 「국유재산법」 제55조제1항에 따르지 아니한 국유재산의 양여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률에 따라 국가에 대한 기부 또는 대체시설의 제공(이에 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대가로서 국유재산의 사용료등을 감면하거나, 장기 사용허가등을 하거나, 국유재산을 양여하는 경우
2. 「도로법」, 「하천법」, 「소하천정비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어촌·어항법」 또는 「항만법」에 따라 국유재산을 점용허가, 사용허가, 대부 또는 양여하는 경우

다만, 「국유재산특례제한법」과 달리 제정안은 공유재산 특례에 “영구시설물 축조”¹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를 포함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하게 되는 경우 해당 공유재산의 활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영구시설물 축조에 관한 특례는 필요최소한으로 허용될 필요가 있어 보이나, 이를 제정안을 통하여 관리할 경우 행정안전부의 부담이 증가하고 특례부여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측면이 있어 보임.

기획재정부에 의하면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정 당시 국유재산 특례에 “영구시설물 축조”를 추가할 경우 [별표] 규정이 추가로 증가하여 기획재정부의 관리 부담이 증가한다는 점, 국유재산 특례에 영구시설물 축조를 제외하여 국유재산 활용도를 제고하고 대규모 국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이를 특례에서 제외하였음.

행정안전부는 개별법 상 영구시설물 축조 특례는 2024년 10월말 기준 47건에 불과하여 행정안전부가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 공유지 상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경우 사용허가가 종료된 이후 해당 공유지의 관리·활용에 한계가 발생하여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공유재산 특례에 “영구시설물 축조”를 추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14) 참고로, 현행 「공유재산법」에 의하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사유를 제외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도랑·다리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음(「공유재산법」 제13조)

2. 공유재산특례의 제한, 기본원칙 (안 제4조 및 제5조)

제정안은 동법에 따른 절차 이외에 개별 법률에서 공유재산특례를 별도로 규정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개별 법률에 공유재산특례를 규정하려는 경우 준수하여야 하는 원칙에 대해 규정하려는 것임.

한병도의원안	배준영의원안
제4조(공유재산특례의 제한) ① 공유재산특례는 별표에서 규정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다. ② 공유재산특례의 존속기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이 법 별표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별표에 따른다. ③ 별표는 이 법 외의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다.	제4조(공유재산특례의 제한) ① (한병도의원안과 같음). ② (한병도의원안 제3항과 같음) ③ (한병도의원안 제2항과 같음)
제5조(공유재산특례의 기본원칙) <u>법률에 공유재산특례를 규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u> 1. 공유재산특례의 목적이 공익에 부합할 것 2. 공유재산특례의 요건이 구체적이고 명확할 것 3. 공유재산특례가 예산 지원, 현물 출자나 그 밖의 다른 방법보다 적	제5조(공유재산특례의 기본원칙) <u>공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으로 공유재산특례를 신설 또는 변경하거나 운용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과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u> 1. (한병도의원안과 같음) 2. (한병도의원안 제3호와 같음) 3. (한병도의원안 제2호와 같음)

한병도의원안	배준영의원안
절할 것 4. <u>규정하려는 공유재산특례의 존속 기간이 그 목적에 비추어 적절할 것</u>	4. <u>공유재산특례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동안 운용 될 것</u>

첫째, 안 제4조는 동 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특례를 정할 수 없도록 하고, 특례의 존속기한은 [별표]에 규정된 사항을 따르도록 하며, [별표]는 이 법 외의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도록 제한하려는 것으로, 개별법에 의한 공유재산특례가 무분별하게 신설·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국유재산특례제한법」¹⁵⁾을 참고한 것으로 보임.

특히, 다른 법률의 개정 형식으로 「공유재산특례제한법률안」 별표를 개정하여 공유재산특례를 신설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개별법에 의한 공유재산특례의 남설 방지라는 제정안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됨.

또한, 제정안 [별표]는 173개의 현행법에 따른 특례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의 기득권 내지 신뢰를 보호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될 것으로 보임.

15)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4조(국유재산특례의 제한) ① 국유재산특례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다.

② 이 법 별표는 이 법 외의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다.

③ 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이 법 별표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별표에 따른다.

둘째, 안 제5조는 개별법률에 공유재산특례를 규정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원칙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¹⁶⁾과 유사하게 공익에의 부합 여부, 구체적이고 명확한 요건 등을 세우고 있어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3. 공유재산특례 신설 등에 관한 심사 등 (안 제6조 및 제7조)

제정안은 공유재산 특례를 신설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타당성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공유재산특례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해 공유재산정책협의회 심의를 거쳐 공유재산특례의 목적, 경제적 비용 등을 검토하도록 하려는 것임.

한병도의원안	배준영의원안
제6조(공유재산특례의 신설 등에 관한 심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유재산특례를 신설 또는 변경(이하 이 조에서 “공유재산특례신설등”이라 한다)하는 내용의 법령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법령안	제6조(공유재산특례의 신설 등에 관한 심사) ① ~ ④ (한병도의원안과 같음)

16) 제5조(국유재산특례의 기본원칙) 국가는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으로 국유재산특례를 신설 또는 변경하거나 운용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과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1. 국유재산특례의 운용이 국가 전체의 이익에 부합할 것
2. 국유재산특례가 예산 지원, 현물출자나 그 밖의 다른 방법보다 특례 대상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방법으로서 적절할 것
3. 국유재산특례의 목적, 적용대상 및 적용요건을 법률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할 것
4. 국유재산특례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동안 운용될 것

한병도의원안	배준영의원안
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공유재산특례시설등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공유재산특례시설등에 관한 계획서(이하 “공유재산특례계획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사요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유재산특례시설등이 제5조 각 호의 원칙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심사를 하려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정책협의회(이하 “공유재산정책협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 공유재산특례시설등이 제5조 각 호의 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특례계획서를 제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공유재산특례계획서의 재검토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공유재산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유재산특례	⑤ <u>협의회의 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공유재산정책협의회 심의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u> ⑥ (한병도의원안 제5항과 같음) 제7조(공유재산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① ~ ③ (한병도의원안과 같음)

한병도의원안	배준영의원안
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정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유재산특례의 목적, 경제적 비용, 운영 방식 및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공유재산특례의 폐지를 위한 관련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1. 공유재산특례의 운영 방식 또는 절차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2. 공유재산특례를 유지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제도개선 요청을 받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공유재산특례의 폐지를 위한 관련 법령의 개정 방안이나 공유재산특례를 대체할 수 있는 제도의 신설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u>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u>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u>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u>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⑤ (한병도의원안과 같음)

한병도의원안	배준영의원안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안 제6조)

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유재산특례를 신설 또는 변경하는 내용의 법령 제·개정을 추진하려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타당성에 대한 심사를 요청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유재산정책협의회¹⁷⁾의 심의를 거쳐 심사하되, 심사결과 공유재산특례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재검토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는 공유재산특례의 신설 또는 변경을 면밀하게 심사함으로써 특례의 난립을 방지하고, 공익에 부합하는 특례가 허용되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며,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6조를 참고한 것으로 보임.¹⁸⁾

17) 「공유재산법」

제18조의3(공유재산정책협의회) ①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공유재산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공유재산에 관한 중요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2. 공유재산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신설 및 폐지에 관한 중요 사항
3. 기타 공유재산에 관한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18) 제6조(국유재산특례의 신설등에 관한 심사) ① 중앙관서의 장(「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여 국유재산특례를 신설 또는 변경(이하 이 조에서 “신설등”이라 한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국유재산특례 신설등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국유재산특례 신설등에 관한 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때에는 국유재산특례의 신설등이 제5조에

공유재산특례는 법정 특례로서 그 신설·변경은 공유재산의 실제 운영·관리보다는 국가의 법률 개정을 통해 정책 및 제도를 설계하는 영역에 속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부조직법」 제34조제1항¹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세제 지원 사무를 관장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유재산특례의 신설·변경시 행정안전부장관이 이에 대해 심사할 필요가 있어 보임.

또한, 배준영의원안 제6조제5항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과 달리 공유재산정책협의회 위원장이 공유재산정책협의회 심의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유재산특례의 적절성을 심사함에 있어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안 제7조)

제정안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공유재산특례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공유재산정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특례의 목적, 경제적 비용

다른 국유재산특례의 기본원칙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은 제3항에 따라 심사를 할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26조에 따른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기획재정부장은 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 국유재산특례의 신설등이 제5조 각 호의 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획서를 제출한 중앙관서의 장에게 그 계획서의 재검토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19) 「정부조직법」

제34조(행정안전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재정·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정, 선거·국민투표의 지원,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및 방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등을 검토하고, 검토 결과 특례의 운영 방식 또는 절차가 적절하지 않거나 특례를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특례의 폐지를 위한 관련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제도개선 요청을 받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하게 하려는 것으로, 공유재산특례를 주기적으로 점검함으로써 방만한 운용을 방지하고 특례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며,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이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7조²⁰⁾를 참고한 것으로 보이나, 배준영의원안 제7조제4항은 한병도의원안 제7조제4항 및 「국유재산특례

20)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7조(국유재산특례에 대한 점검·평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유재산특례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따른 점검·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1. 국유재산특례의 지출액 규모, 운용 절차 등 운용 실태에 대한 점검

2. 국유재산특례에 대한 목표달성도, 경제적 비용, 운용성과 등 효과성 및 타당성 평가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점검·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국유재산특례의 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국유재산특례를 존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해당 국유재산특례의 폐지 등을 위한 법령의 개정 등 제도개선 요청

2. 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소관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법령 개정 추진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제도개선을 요청받은 소관 중앙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국유재산특례의 폐지 등을 위한 법령의 개정방안, 국유재산특례를 대체할 수 있는 제도의 신설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점검 및 평가 결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평가와 관련한 조사·연구를 전문 연구기관에 의뢰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의뢰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제1항제2호에 따른 평가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한법」과 달리 행정안전부장관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뿐만 아니라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까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실제 공유재산의 운영·관리 주체는 국가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라는 점을 고려하면, 공유재산특례에 대한 효과적인 사후관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4. 양여의 용도 제한 (한병도의원안 제8조 및 배준영의원안 제9조)

제정안은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을 양여받은 자의 사용기한을 규정하고, 공유재산을 양여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한병도의원안	배준영의원안
제8조(양여의 용도 제한) ①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을 양여받은 자는 그 재산을 양여받은 날부터 10년 이상 지정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양여하는 경우 <u>양여받은 자가</u> 양여받은 재산을 10년 내에 양여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면 해당 양여 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	제9조(양여의 용도 제한) ① (한병도의원안과 같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양여하는 경우에는 양여받은 재산이 10년 이내에 양여목적과 다르게 사용되면 양여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한병도의원안	배준영의원안
야 한다.	

제정안은 양여의 사용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유재산을 양여하는 경우 양여받은 재산을 사용기간 내 양여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면 양여 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12조를 참조한 것으로 보임. 21)

현행 「공유재산법」은 일반재산에 한하여 양여를 허용하되 일정한 경우 양여받은 일반재산을 10년 이내에 그 양여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면 양여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는 등 공유재산의 양여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²²⁾, 제정안에서 공유재산을 양여 가능한 기한을 설정하고 양여된 공유재산을 목적 외로 사

21) 제12조(양여의 용도 제한) ① 법률에 따라 국유재산을 양여받은 자는 그 재산을 양여받은 날부터 10년 이상 지정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국유재산을 양여하는 경우에는 양여받은 재산이 10년 이내에 양여목적과 다르게 사용되면 양여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22) 「공유재산법」

제40조(양여) ①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양여할 수 있다.

1. 해당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구역에 있는 시·군 또는 자치구에서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용도가 지정된 국고보조금·지방교부세 또는 기부금으로 조성된 일반재산으로서 그 용도에 따라 양여하는 경우
3.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한 경우에 그 용도에 대신하여 다른 시설을 마련하여 제공한 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양여하는 경우
4. 도시계획사업 집행을 부담한 지방자치단체에 그 도시계획사업시행지구에 있는 토지를 양여하는 경우
5. 그 밖에 자산가치가 하락하거나 보유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일반재산을 양여하는 경우에는 양여받은 일반재산이 10년 이내에 그 양여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면 양여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용할 경우 양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5. 공유재산특례종합계획 수립 (배준영의원안 제8조)

배준영의원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공유재산법」에 따른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해 공유재산특례 종합계획(이하 “공유재산특례종합계획”이라 함)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

배준영의원안
제8조(공유재산특례 종합계획의 수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공유재산특례 종합계획(이하 “공유재산특례종합계획”이라 한다)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공유재산특례종합계획에는 공유재산특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현행 「공유재산법」 제10조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계획적으로 관리·처분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함²³⁾.

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공유재산특례종합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는 「공유재산법」 제10조제3항제4호에 따른 “공유재산의 사용료 감면 등 특례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다만,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내에 공유재산특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통합적으로 이를 관리·운영할 필요성이 있으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및 「국유재산법」의 사례²⁴⁾를 고려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3항제4호를 “4. 공유재산의 사용료 감면 등 특례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에서 “4. 「공유재산특례제한법」 제8조에 따른 공유재산특례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함으로써 법 해석상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어 보임.

23) 「공유재산법」

제10조(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계획적으로 관리·처분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그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이 관계 법령에 따른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처분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공유재산 정책방향
2. 공유재산 관리·처분의 총괄계획
3. 공유재산 처분의 기준에 관한 사항
4. 공유재산의 사용료 감면 등 특례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의 기준 및 수립에 필요한 그 밖의 정보 등이 포함된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2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8조(국유재산특례 종합계획의 수립)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다음 연도의 국유재산특례에 관한 계획을 종합조정하여 국유재산특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유재산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종합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국유재산법」

제9조(국유재산종합계획) ④ 국유재산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8조에 따른 국유재산특례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6. 권한의 위임 (배준영의원안 제10조)

배준영의원안은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인 공유재산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 권한을 다른 기관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배준영의원안
제10조(권한의 위임) ① 제7조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공유재산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이 공유재산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배준영의원안 제7조는 공유재산특례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공유재산특례의 목적, 경제적 비용 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제정안은 해당 권한 일부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수임기관이 사후관리 업무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13조를 참조한 것으로 보임²⁵⁾.

다만, 행정안전부와 전문기관 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사후관리 업무를 “위임”하는 것과 “위탁”하는 것 중 어떠한 방식이 적절한지 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²⁶⁾.

25) 제13조(권한의 위임) ① 제7조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국유재산특례에 대한 점검·평가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조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에 대한 점검·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7. 부칙

한병도의원안	배준영의원안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한병도의원안과 같음)
제2조(공유재산특례에 대한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은 이 법 시행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적용한다.	제2조(공유재산특례에 대한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한병도의원안과 같음)
제3조(양여의 용도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8조는 이 법 시행 이후 공유재산을 양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유재산특례 종합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8조는 이 법 시행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적용한다. 제4조(양여의 용도 제한에 관한 적용례) (한병도의원안 제3조와 같음)

제정안 부칙은 제정안의 시행일, 제정안의 시행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공유재산특례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한다는 적용례, 공유재산 양여의 용도 제한에 관한 적용례 등에 관해 규정하려는 것으로, 제정안 시행에 있어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임.

26) “위임”은 원 권한자의 권한 일부를 보조기관·하급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지휘·감독 하에 있는 행정기관 등에 맡기는 것을 말하며, “위탁”은 원 권한자로부터 독립된 다른 행정기관 등에 맡기는 것을 의미함(국회 법제실, 「법제기준과 실제」, 2024, p726)

참고

소관 부처별 공유재산 특례 전체 현황

연번	소관부처	법률명 (173개 법률)	사용료 등 감면	장기사용 ·대부	영구 시설물	양여
	특례 규정(287개)		159	45	47	36
1	문화체육관광부	평창올림픽법	●	●	●	
2	산림청	순천만정원박람회법	●			
3	국가보훈부	5·18유공자법	●			
4	교육부	외국교육기관법	●	●	●	
5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법	●	●	●	
6	문화재청	고도육성법	●			
7	국가보훈부	고엽제법	●			
8	행정안전부	공공기록물법	●			
9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의료법	●		●	
10	국토교통부	공공주택 특별법	●	●	●	
11	문화체육관광부	공연법	●			
12	법무부	공익법인법	●			●
1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관법	●			
1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출연기관법	●	●	●	
15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법	●			
16	교육부	교육특구법	●	●		
17	산업통상자원부	지방분권균형발전법	●			
18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단체법	●			
19	환경부	국립공원공단법	●			
20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업박물관법	●	●		
21	교육부	서울대법	●			●
22	교육부	인천대법	●			●
23	국가보훈처	국립묘지법	●		●	
24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법	●			
25	고용노동부	평생직업능력법	●		●	
26	국방부	국방과학연구소법	●	●	●	●
27	국방부	국방시설사업법				●
28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경기대회법	●			●
2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제과학벨트법	●	●	●	
30	국토교통부	국토계획법	●			●

연번	소관부처	법률명 (173개 법률)	사용료 등 감면	장기사용 ·대부	영구 시설물	양여
31	국회사무처	국회사무처법	●			
32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법	●	●		
33	금융위원회	금융중심지법	●			
34	금융위원회	금융혁신법	●			
35	국토교통부	기업도시법	●			
36	보건복지부	노인복지법	●			
37	환경부	녹색융합클러스터법	●			
38	환경부	녹색제품구매법	●			
39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리모델링법	●			●
40	농림축산식품부	농외소득법	●			
41	농촌진흥청	농촌진흥법	●			●
42	보건복지부	대한노인회법	●			
43	국회사무처	헌정회법	●			
44	보건복지부	적십자법	●			
45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법	●			
46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	●	●	●	
47	국토교통부	도시정비법	●	●	●	●
48	국토교통부	도시재생법	●	●	●	
49	국토교통부	도시재정비법	●	●	●	
50	국토교통부	도시철도법				●
51	국토교통부	도청이전법	●			
52	국가보훈처	독도수비대법	●			
53	국가보훈처	독립기념관법	●			●
54	교육부	동북아역사재단법	●			
55	문화체육관광부	동학농민명예회복법				●
56	산업통상자원부	무역거래기반법	●	●	●	
57	문화재청	무형문화재법	●			
58	문화재청	국가유산기본법	●			
59	국토교통부	물류시설법	●			
60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주택법		●	●	
61	행정안전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			
62	행정안전부	바르게살기조직법	●			
63	법무부	법률구조법	●			

연번	소관부처	법률명 (173개 법률)	사용료 등 감면	장기사용 ·대부	영구 시설물	양여
64	중소벤처기업부	벤처기업법	●	●	●	
65	통일부	북한이탈주민법	●	●		
66	국토교통부	소규모주택정비법	●			
67	교육부	사립학교법	●			●
68	기획재정부	민간투자법	●		●	
69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업법	●			
70	산림청	산림복지법	●			
71	산림청	산림자원법	●			
72	교육부	산학협력법			●	
73	중소벤처기업부	산업기술단지법	●		●	
74	국토교통부	산업입지법	●	●	●	
75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집적법	●		●	
76	행정안전부	새마을조직법	●			●
77	국토교통부	새만금사업법	●	●	●	
78	환경부	생물자원관법	●			
79	금융위원회	서민금융법	●			
80	문화재청	세계유산법	●			
81	소방청	소방산업법	●			
82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장비산업법	●			●
83	해양수산부	수산자원관리법	●			●
84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법	●	●		
85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클럽법	●			
86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법	●	●	●	
87	국토교통부	행복도시법	●			●
88	보건복지부	아동복지법	●			
89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도시법	●	●	●	
90	중소벤처기업부	여성기업법	●			
91	해양수산부	여수박람회법	●			●
9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특구법		●	●	
93	해양수산부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
94	보건복지부	영유아보육법	●			
95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법	●	●	●	
96	국토교통부	용산공원법	●			

연번	소관부처	법률명 (173개 법률)	사용료 등 감면	장기사용 ·대부	영구 시설물	양여
9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울산과학기술원법	●			●
98	여성가족부	위안부피해자법	●			
99	산림청	임업진흥법	●			●
100	행정안전부	자원봉사법	●			
101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지역법	●	●	●	
102	문화체육관광부	작은도서관법	●			
103	중소벤처기업부	장애인기업법	●			
104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법	●			
105	행정안전부	재해이주대책법	●			
106	산업통상자원부	전시산업발전법		●	●	
107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법	●	●	●	
10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법	●			
109	행정안전부	제주특별법	●	●	●	●
110	국방부	미군이전평택지원법				●
111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진흥법				●
112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창업법	●			
113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114	산업통상자원부	방폐물유치지역법	●		●	
115	보건복지부	중증장애인생산물법	●			
116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교육법	●			
117	문화체육관광부	지방문화원법	●			
118	행정안전부	지방연구원법	●			
119	국토교통부	지역개발지원법	●	●	●	
120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위기대응법	●			
121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중소기업법	●	●		
122	국가보훈부	참전유공자법	●			
123	보건복지부	첨단의료단지법	●	●	●	
124	여성가족부	청소년기본법	●			
125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시설법	●			
126	농림축산식품부	초지법	●		●	
127	해양수산부	크루즈산업법	●			
128	문화체육관광부	태권도법	●	●	●	
129	국방부	특수임무유공자법	●			

연번	소관부처	법률명 (173개 법률)	사용료 등 감면	장기사용 ·대부	영구 시설물	양여
130	산업통상자원부	폐광지역법	●	●		●
131	교육부	폐교활용법	●	●	●	
132	교육부	학교용지법				●
133	농촌진흥청	4에이치법	●	●		
134	교육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			
135	교육부	사학재단법	●	●		
136	교육부	한국연구재단법	●			
137	행정안전부	자유총연맹법	●			
138	교육부	장학재단법	●			
139	교육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			
140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연구원법				●
141	여성가족부	청소년연맹법	●			●
142	교육부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			●
143	해양수산부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	●	●	
144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			●
145	환경부	한국환경공단법	●			
146	해양수산부	항만공사법	●		●	
147	해양수산부	해양산업클러스터법	●	●	●	
148	해양수산부	해양치유자원법	●			
149	해양수산부	해양환경관리법	●			
150	산업통상자원부	해외진출기업복귀법	●	●	●	
151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법	●		●	
152	환경부	환경기술산업법	●			
153	산업통상자원부	친환경자동차법	●	●	●	
15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과학기술원법	●			●
15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			●
15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광주과학기술원법	●			●
157	공정거래위원회	생협법	●			
158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첨단전략산업법	●	●	●	
159	문화체육관광부	박물관미술관법	●			
160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진흥법	●			
161	국방부	광주군공항이전법	●			
162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법	●			

연번	소관부처	법률명 (173개 법률)	사용료 등 감면	장기사용 ·대부	영구 시설물	양여
163	국방부	군사기지법				●
164	국토교통부	노후계획도시정비법		●	●	
165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정비법	●			
166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간재구조화법	●	●	●	●
167	국토교통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			
168	국토교통부	도심융합특구법	●	●	●	
169	국토교통부	도심항공교통법	●			
170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농업법	●			
171	문화재청	자연유산법	●			
172	행정안전부	한국도로교통공단법	●			
173	해양경찰청	해양재난구조대법	●			

문 의 처

02)6788-5337